

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대비표('26.8.20. 시행)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u> <u>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u>
<u><신 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⑥ (생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37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 ----- ----- 사용 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4항·제6항----- ----- -----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 ----- ----- ----- -----
1.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⑤ ----- - 제4항----- -----, ----- ----- ----- ----- ----- ----- 이내, <u>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u> -----, ⑥ ----- 제5항 후단 ----- ----- -----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⑦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2. 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의 사실 3. 근로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26.8.20. 시행)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26.7.1. 시행)

현행	개정안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 아. (생략)

<신설>

2. (생략)

②·③ (생략)

-----.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